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보 도 자 료
희망의 새시대
http://www.motie.go.kr

2014년 9월 26일(금) 조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산업기술개발과 천영길 과장(044-203-4520), 박만희 사무관(4521)

산업부, 연구개발(R&D) 부정 사용에 대한 제재부가금 본격 시행
- 17개 기업과 연구원 5명에게 제재부가금 7억여 원 부과 -

□ 산업통상자원부가 연구개발 사업비를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기업과 연구원에 대한 **제재부가금을 본격 시행**한다.

□ 이번에 부과되는 제재부가금은 '12년 이후 발생한 부정 사용 행위 **26개 과제**로서, **17개 기업에 7억 5백만 원, 연구원 5명에게 2천9백만 원**이 부과했다.

○ 산업부는 24일 **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* 심의**를 거쳐 이번 26개 과제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 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.

* 제재부가금 부과·징수에 대한 공정성과 신중성을 높이기 위해 법조계, 산업계, 학계 등 연구개발 분야 전문가 14명으로 구성.

○ 금액규모별로는 부정 사용 규모가 1억 원 미만인 16건에 대해 1억3천2백만 원을, 1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인 10건에 대해 6억 2백만 원을 부과했다.

○ 유형별로는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 과제의 절반을 차지하는 '연구비를 무단 인출해 회사경영자금으로 유용'한 사례 13건에 대해 4억9천1백만 원을,

- '허위증빙 처리하여 연구비를 유용'한 7건과 '납품기업과 공모해 횡령'한 3건에 대하여 각각 1억2천7백만 원과 2천7백만 원을 부과했다.

<기업(개인)별 제재부가금 부과 요약>

부정사용액 규모 (구간별 부과율)	적발과제 건수	기업 (부과금액)	연구원 (부과금액)	합 계
1억원 미만 (20%)	16개	11개 (103백만원)	5명 (29백만원)	17개 기업 및 연구원 5명, 734백만원
1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(40%)	10개	10개 (602백만원)	-	

* 4개의 기업은 각각 2건의 과제에서 사업비를 부정사용

<부정사용 유형별 부과 요약>

구분	무단인출하여 회사 경영 자금으로유용	허위증빙 후 연구비유용	납품기업과 공모·횡령	기타 목적외사용
건수 (부과금액)	13개 (491백만원)	7개 (127백만원)	3개 (27백만원)	3개 (89백만원)

□ 제재부가금은 연구개발 사업비를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**참여제한과 사업비환수 외에 추가로 연구용도 외 사용금액의 100%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**하는 제도로서,

○ '14. 5.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(제재부가금 부과 의무화) 이후 그간 시행규정을 완비하고, 9월 말 정부부처 최초로 시행

○ 올해 **12월**에는 올해 **상반기 발생한 부정사용행위**에 대하여 2차로 **제재부가금이 부과**될 예정임

□ **차동형** 산업부 **산업기술정책관**은 "정부는 부패척결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,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**최초로 시행**되는 제재부가금 제도가 **연구비 부정 사용 행위 근절의 초석**이 되기를 기대한다."라고 말했다.

□ 산업부는 지난 8월,「**R&D자금 부정사용 방지대책**」을 마련하고 제재부가금 이외에도 **공익신고* 활성화, R&D 과제 관리 강화** 등을 통해 **부정사용 근절을 강력히 추진**하고 있다.

*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공익·예산낭비 신고센터 (http://www.keit.re.kr/)
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신문고 (http://www.kiat.or.kr)
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공익신고센터 (http://www.ketep.re.kr/)

[붙임]

참고자료1.<제재부가금 부과내역>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박만희 사무관(☎ 044-203-452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[참고] 제재부가금 부과내역

No	부과대상	부정사용 출연금 (천원)	제재부가금 부과율	감경	제재부가금 부과액 (천원)	부정사용방법	유형별
1	㈜제○○○○○	85,000	20%	50%	8,500	'12.1월~'12.8월, 총8회에 걸쳐 무단인출과 재입금을 반복하면서 85백만원의 정부출연금을 회사운영비로 사용 *적발당시 자발적으로 연구비를 원상회복한 상태임을 감안하여 제재부가금을 감경	회사경영 자금사용
2	㈜아○○○	206,098	40%		82,439	'11.12월, 회사 경영이 악화되자 정부출연금 206백만원을 다른 통장으로 이체 후 회사 운영비로 사용	회사경영 자금사용
3	㈜정○	91,619	20%		18,324	'11.12월~'12.2월, 총 10회에 걸쳐 허위세금계산서 발행, 특허분석 없이 허위로 비용 처리하는 방법으로 정부출연금 92백만원을 유용	허위증빙
4	㈜플○○○○○	86,321	20%		17,264	'11.12월~'12.2월, 총 17회에 걸쳐 회사 영업비용을 연구비용으로 허위 처리하고, 발생하지 않은 허위 특허 비용으로 집행하는 등 정부출연금 86백만원을 유용	허위증빙
5		16,504	20%		3,301	'11.11월~'12.2월, 연구장비를 제작하지 않고 허위로 영수증을 발급받는 수법으로 17백만원의 정부출연금 유용	허위증빙
6	㈜○○○○전자	245,000	40%	50%	49,000	'12.1월~'12.8월, 총 6회에 걸쳐 정부출연금을 무단 출금하여 당좌어음 결재 등에 사용 후 이를 다시 연구비 계좌에 입금하는 수법으로 당해년도 사업비 전액을 일시 전용 *적발당시 자발적으로 연구비를 원상회복한 상태임을 감안하여 제재부가금을 감경	회사경영 자금사용

No	부과대상	부정사용 출연금 (천원)	제재부가금 부과율	감경	제재부가금 부과액 (천원)	부정사용방법	유형별
7	㈜에○○○○	96,756	20%	50%	9,676	'12.8월~9월, 시작품제작비 및 세미나 개최비용 명목으로 허위영수증을 발행하여 연구비 집행 후 실제로는 회사직원 급여 지급등 타목적으로 사용하고 3개월 후에 연구비 계좌로 재입금 *적발당시 자발적으로 연구비를 원상회복한 상태임을 감안하여 제재부가금을 감경	허위증빙
8	중○○○○○○㈜	88,000	20%		17,600	'12.1월~2월, 정부출연금 88백만원을 무단 인출하여 직원급여, 공과금납부, 퇴직금등 회사운영비로 집행	회사경영 자금사용
9	㈜글○○○	183,042	40%		73,217	'12.2월~5월, 영업목적으로 재료를 구입하면서 연구개발용 재료비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정부출연금 183백만원을 유용	허위증빙
10	㈜코○○○	51,343	20%		10,269	'12.2월~7월, 연구개발과제와 무관한 시제품 제작 및 시험분석료로 정부출연금 51백만원을 집행	기타
11	윤○○ (연구원)	4,631	20%	50%	463	'11.11월, 정부출연금 5백만원을 연구비 계좌에서 회사계좌로 무단 인출하여 과제와 무관하게 집행 후 5일후에 연구비 계좌로 입금 *적발당시 자발적으로 연구비를 원상회복한 상태임을 감안하여 제재부가금을 감경	회사경영 자금사용
12	김○○ (연구원)	20,763	20%		4,153	'11.11월~12월, 과제총괄책임자 김○○은 재료비 단가를 부풀려 지급 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21백만원의 정부출연금을 횡령	납품기업 공모•횡령
13	테○○㈜	158,717	40%		63,487	'12.11월, 연구개발 과정 중 회사경영이 악화되자 정부출연금 159백만원을 무단 인출하여 회사 운영자금으로 유용	회사경영 자금사용

No	부과대상	부정사용 출연금 (천원)	제재부가금 부과율	감경	제재부가금 부과액 (천원)	부정사용방법	유형별
14	○○로봇㈜	185,545	40%		74,218	'12.7월~'13.1월, 허위 증빙 처리 및 과제와 관련성이 낮은 물품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정부출연금 186백만원을 유용	기타
15		20,979	20%		4,196	'12.7월~9월, 허위 증빙 처리 및 과제와 무관한 물품구매 후 재입금하는 방법으로 정부출연금 21백만원을 유용	기타
16	정○○ (연구원)	6,513	20%		1,303	'12.2월~4월, 연구원 정○○은 강사료 지급관련 문서를 허위로 작성 후 타인에게 지급된 강사료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정부출연금 650만원을 횡령	허위증빙
17	㈜정○○○○	28,079	20%		5,616	'12.7월~'13.4월, 정부출연금 28백만원을 회사의 대출원리금 및 이자상환에 사용 후 일부금액은 재입금	회사경영 자금사용
18	(주)대○○○○○	22,706	20%		4,541	'12.9월, 실제로는 3D TV를 구입하면서 허위로 SW 구매영수증을 첨부하여 정부출연금 23백만원을 유용	허위증빙
19	에○○○㈜	158,552	40%		63,421	'12.8월, 정부출연금 159백만원을 체불임금 지급 및 회사 대금 결재 목적으로 유용	회사경영 자금사용
20		19,549	20%		3,910	'12.7월~8월, 정부출연금 19백만원을 무단 인출하여 회사경영 자금으로 사용	회사경영 자금사용

No	부과대상	부정사용 출연금 (천원)	제재부가금 부과율	감경	제재부가금 부과액 (천원)	부정사용방법	유형별
21	㈜시○○○○	322,192	40%	50%	64,438	'11.11월~'12.1월, 총 11회에 걸쳐 정부출연금 322백만원을 무단 인출하여 회사 경영자금으로 사용 후 7회에 걸쳐 연구비 계좌로 재입금 *적발당시 자발적으로 연구비를 원상회복한 상태임을 감안하여 제재부가금을 감경	회사경영 자금사용
22		138,190	40%	50%	27,638	'11.11월~'12.1월, 총 4회에 걸쳐 정부출연금 138백만원을 무단 인출하여 회사 경영자금으로 사용 후 연구비 계좌로 재입금 *적발당시 자발적으로 연구비를 원상회복한 상태임을 감안하여 제재부가금을 감경	회사경영 자금사용
23	㈜○○에너지	125,789	40%		50,316	'11.12월~'12.2월, 총 20회에 걸쳐 126백만원의 정부출연금을 무단 인출하여 회사 경영자금으로 유용하고 일부는 재입금	회사경영 자금사용
24	윤○○, 박○○ (연구원)	38,333	20%		7,667	'11.12월~'12.8월, ○○전자 연구원 2명은 연구개발에 필요한 SW를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 증빙처리하고, 대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정부출연금 106백만원을 횡령	납품기업 공모•횡령
25		76,683	20%		15,337		
26	㈜○○텍	134,940	40%		53,976	'12.10월~11월, 총 4회에 걸쳐 , 135백만원의 정부출연금을 대출금 상환, 인건비 지급 및 카드대금 등 회사운영경비로 사용	회사경영 자금사용
	26개 과제	**2,611,846**			**734,267**		